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97. 8. 28

의안 번호	81
----------	----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 공인 관리기관의 명칭과,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명칭을 바로잡고
-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는 민원실전용 중계민원 구청장 직인에 대하여, 그동안 관수자와 관리요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는 등 문제점이 있어 민원전용 동장 직인과 같은 요령으로 관리가 되도록 관련조항을 삽입코자 함

2. 주요골자

- 공인 관리기관의 명칭을 규정에 맞게 명칭변경
(안 제1조, 제2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 직제개정에 따른 실장을 담당관으로
시민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명칭변경
(안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항)
- 동 사무장 유고시 공인관수자 지정 및 관수자와 사용자간 인계인수 대상 공인을 민원전용 동장직인에서 민원실전용 중계민원 구청장 직인을 추가함 (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3. 관련법령 - 사무관리규정 제 41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사업소, 그밖의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공무원”을 소속행정기관, 동 및 기관장의 보좌·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제2조제1항중 “사업소장, 동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을 “소속 행정기관장, 동장, 보좌·보조기관”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의 “사업소장”을 “소속 행정기관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중 “시민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사업소장, 동장, 부속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이나”를 “소속행정기관장, 동장 또는 보좌·보조기관이나”로 하며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을 “소속행정기관장의 보조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사업소장, 동장”을 “소속행정기관장, 동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소관 실·과장, 사업소에는 주무계장”을 “소관 담당관·과장, 소속행정기관은 선임계장(합의제 행정기관은 소관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민원전용 동장직인”을 “민원실 전용 중계민원 구청장 직인 및 민원전용 동장직인”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민원전용 동장직인”을 “민원실전용 중계민원 구청장 직인 및 민원전용 동장직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案
<p>제1조 (목적) ①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사업소, 그밖의 부속기관의장 및 그 기관의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①..... .. (소속행정기관, 동 및 기관장의 보좌·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p>
<p>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구청장, 사업소장, 동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p> <p>②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은 “별표1” 과 같이 사업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 <u>소속행정기관장, 동장, 보좌·보조기관</u></p> <p>② <u>소속행정기관장</u>,</p> <p>..... <u>소속행정기관장</u>,</p> <p>③④</p>
<p>제6조 (공인의 신조개각) ①공인의 신조·개각은 시민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p>	<p>제6조 (공인의 신조개각) ①..... <u>민원봉사과장</u>이.....</p>

현행	개정案
<p>②사업소장, 동장, 부속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u>시민과장</u>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u>사업소장</u>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하고자 할 때에는 <u>구청장</u>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소속행정기관장, 동장 또는 보좌·보조기관이나 <u>민원봉사과장</u>..... <u>소속행정기관장</u>의 보조기관</p>
<p>제7조 (공인대장) <u>시민과장</u>은..... (이하생략)</p>	<p>제7조 (공인대장) <u>민원봉사과장</u>은.....</p>
<p>제8조 (인영의 보존) <u>시민과장</u>은 (이하생략)</p>	<p>제8조 (인영의 보존) <u>민원봉사과장</u>은....</p>
<p>제10조 (신조 또는 개각 인영보고) ①신조 또는 개각된 <u>구청장</u>, <u>사업소장</u>, <u>동장</u>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3부를 익월 5일까지 <u>부산광역시</u> 시장에 제출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p>	<p>제10조 (신조 또는 개각인영보고), <u>소속행정기관장</u>,</p>
<p>제11조 (공인의 폐기) ①공인의 개각, 기관 및 부서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할 때에는 그 공인을 <u>시민과장</u>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p>	<p>제11조 (공인의 폐기) ①..... <u>민원봉사과장</u></p>
<p>②<u>시민과장</u>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p>	<p>② <u>민원봉사과장</u></p>

현행	개정案
<p>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u>시민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u>민원봉사과장</u>.....</p>
<p>제13조 (공인의 관수자) ①공인 관수자는 구 본청에서는 실·과장, 사업소에는 주무계장, 등에 있어서는 사무장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과 현장민원실에서 중계민원 처리를 위한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p> <p>②공인관수자의 유고시에는 공인관수자로 미리 지정된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다만, 동사무장의 유고시 <u>민원전용 등장직인의 관리대행은</u> 민원주임이 하고 민원주임 유고시 총무주임이 대행한다.</p> <p>③동사무소 <u>민원전용 등장 직인의</u>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수자와 사용자간에 근무시간 중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인수 인계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인계 받은 사용자가 관수 책임자가 된다.</p>	<p>제13조 (공인의 관수자) ①..... <u>담당관·과장, 소속행정기관은 선임계장 (합의제 행정기관은 소관 담당관·과장)</u> ②..... <u>민원실전용 중계민원 구청장 직인 및 민원전용 등장직인</u> ③.... <u>민원실 전용 중계민원 구청장 직인 및 민원전용 등장직인</u></p>